

## 재정 신청서

신청인(고소인): 김명호

피신청인(피의자):

이광범(사법정책실장),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219, 137-750

이상훈(서울고법 판사),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1-1, 137-735

이혁우(서울중앙지법판사),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1-1, 137-735

홍성무(서울고법 판사)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1-1, 137-735

피신청인(피의자)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2006형제42529호 직권남용의 사건  
에(이하 '직권남용사건') 있어서, 동 검찰청 소속 검사 신성식이 2006. 5. 30.  
한 불기소처분(각하)에 대하여,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  
에 따라 재정 신청합니다.

신청인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통지를 수령한 날: 2006. 6. 5.

### 신청 취지

"피의자들 이광범, 이상훈, 이혁우, 홍성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2006형제  
42529호 직권남용에 대하여, 피의자들 이광범, 이상훈, 이혁우, 홍성무를 서  
울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."

라는 재판을 바랍니다.

### 이 사건 개요

2006. 2. 24. 대법원 경비대장 전금식이 신청인을 판사 명예훼손으로  
고발하였고(2006형제24637, 이하 '명예훼손사건'), 신청인은 맞고소 및 위  
피의자들에 대하여,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행사 등을 방해한(헌법  
제27조의 제3항), 직권남용(형법 제123조), 직무유기의 죄목으로 2006. 4.  
17. 고소하였습니다.





## 사실행위들

### 첫째: 이혁우 판사에 대하여

(2005. 6. 24.) 제출된 진정서에 무성의한 답변으로(입증자료1의 증거자료 15), 민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혁우 판사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방조.

### 둘째: 이상훈 판사에 대한 진정서들

신청인은, 4개월 동안의 이상훈 판사에 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하여, 진정서를 7차례 제출하였습니다.(입증자료1의 증거자료3)

그러나, 이광범 전 인사실장은 친형인 이상훈 판사에 대하여, 인사실장으로서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, 경고 또는 징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청인의 재판을 4개월 표류하도록 방조했습니다. 이것은 헌법이 정한 신청인의 권리행사를(10조와 27조의 3, 입증자료1의 증거자료4) 방해하는 직권남용입니다.

물론, 7차례 탄원서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도 없습니다.

4. 위 1-3으로 부터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,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근거가 없습니다. 따라서, 파악자들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바랍니다.

## 입증 자료

1. 고소장(2006. 4. 17일 서울중앙지검접수) 1통
2. 피고 성대의 소송위임자 1통
2. 불기소처분통지서 1 통

2006. 6. 7

위 재정신청인(신청인) 김명호

서울고등법원 귀중

임) 증자료 1  
12 09 2011  
(총 5쪽)

## 고 소 장

고소인: 김명호, 010-5590-8913

본적: 서울시 동작구 상도 2동 365-23

주소: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15, 중앙하이츠빌 105동 1504호

### 피고소인:

대법원 경비 대장, 전금식, 경비 관리 담당 김영수

이광범(사법정책실장),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219, 137-750

이상훈(서울고법 판사),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1-1, 137-735

이혁우(서울중앙지법판사),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1-1, 137-735

홍성무(서울고법 판사)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1-1, 137-735

제목: 2006 형제 24637 사건에 대한 맞고소 및 국제적 망신, 성대입시부정은 폐 방조하는 판사들 고소(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)

2006 형제 24637 사건과 병합, 아래 고소사유 및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고소인의 권리행사와 그의 침해

고소인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망신을 시키고, 작금의 만연된 시험부정들을 조장토록 한, 사상 최대 입시부정사건, 95년도 성대입시부정사건의 진상을 밝힘으로써(증거자료 1, Science, 조선일보 등 언론기사),

첫째: 공공의 이익과 사회정의를 세우고

둘째: 개인적으로는 성대에 복직 등의

행복추구권리(헌법 10조)를 행사하고자 합니다.(증거자료 2, 공개편지)

위 행복추구를 위한 수단인, 신속한 재판·발권 권리(헌법 제 27 조의 제 3 항)가, 피고소인들의 교묘한 집단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인하여, 침해 당하고 있기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
14 10증자로 2

## 소송 위임장

사건	2005나 84701 교수지위확인
원고	김명호
피고	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이사장 권이혁

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의 수임인을 원고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,  
아래와 같은 권한을 수여한다.

수임인	<p><b>일신법무법인</b>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7-2,3 우암빌딩 2,3층          TEL:595-5500(대표) FAX:536-9969(3층), 536-4450(2층)</p>
수권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모든 소송행위</li> <li>1. 반소의 제기 및 응소</li> <li>1. 소의 취하, 화해, 청구의 포기 및 인낙, 참가에 의한 탈퇴</li> <li>1. 복대리인의 선임</li> <li>1. 목적물의 수령</li> <li>1. 공탁,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</li> <li>1. 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, 담보 취소신청, 동신청에 대한 동의, 담보 취소결정 정본의 수령, 동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</li> <li>1. 상소의 제기 또는 그 취하에 관한 권한</li> </ul>

2005. 10. 26.

18260

위임인



서울特別市 鎮路區 明倫洞3街 53番地  
 學校法人 成均館大學  
 理事長 權 祥 赫



## 서울중앙지방검찰청

주 소: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7 (서초동 1724)  
전화번호: (02) 530-4564~5

137-741

10증자료 3  
(총 3쪽)  
서울법원  
서울시우체국  
요금후납

받는 사람  
서울 동작구 상도동 [redacted] 중앙하이츠  
빌 [redacted]동 [redacted]호

김명호 님

156-030

우 137-741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7 (서초동 1724)		서울 중앙지방검찰청	전화 530-3114 / 전송 530-4240
수신자 제 목	김명호 고소·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	발신자 검사 신정식 (인)	2006. 6. 1
피의자명 죄 명		2006년형제 42529호 귀하가 고소(고발)한 당첨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. [redacted]	
		000000-0000000 주민등록번호	
		처 분 일 자 2006.05.30	
처분결과	각하		
피의자명 죄 명	김영수 직무유기	주민등록번호 000000-0000000	처 분 일 자 2006.05.30
처분결과	각하		
피의자명 죄 명	이광범 직무유기	주민등록번호 000000-0000000	처 분 일 자 2006.05.30
처분결과	각하		
피의자명 죄 명	이상훈 직무유기	주민등록번호 000000-0000000	처 분 일 자 2006.05.30
처분결과	각하		
안 내			
1.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가. 30일이내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(검찰청법 제10조)를 하거나 나. 10일이내에 재정신청(형사소송법 제260조,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)을 할 수 있으므로 항고 또는 재정신청 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항고장 또는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내에 우리청에 제출하셔야 하며 위 기간경과 후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 2.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 또는 참고인중지처분된 경우 가. 그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재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, 나.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가 발견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고소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청 사건과로 주소 보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3.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530-311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			